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6. 3. 20.>

에너지절약시설(제13조의11제3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내 용	적 용 범 위
1.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	가. 산업·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	<p>1) 보일러·요(窯)·로(爐) 및 그 부속장치 (산업·건물 공통)</p> <p>가)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.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,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[기존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</p> <p>나) 요(窯)·로(爐) 요·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,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[기존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</p> <p>다)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</p> <p>라)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(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마)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(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2)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내·난방사업,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·수송·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[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(改替)하는 것은 제외한다]</p> <p>3) 폐기에너지회수설비(산업·건물 공통)</p> <p>가) 연소폐열·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</p>

나) 연소폐열·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·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

다)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

라) 폐열회수형 히트펌프(공기열원은 제외한다)

마) 클링커 냉각기(Cross Bar Cooler)

4)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(산업·건물 공통)

가) 원심식 다단진공펌프(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
나) 고온응축수펌프(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
다)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(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
라) 압축기(인버터제어)

마) 고속 터보블로워[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(rpm) 이상으로 한정한다]

바) 고효율 변압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)

사) 프리미엄급(IE3 또는 IE4) 삼상유도전동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)

5) 그 밖에 산업용 설비

가) 어큐물레이터

나)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(인버터) [220킬로와트(kw)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]

다)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

라) 다중효용증발관(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)

	<p>마) 산소부하시스템 바) 증기재압축장치 사)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</p> <p>6)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)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(온도·조명·열원·풍량·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나) 제습공조장치(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) 다) 가습공조장치(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) 라) 야간단열장치 마) 태양광차단장치</p> <p>7)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)</p>
<p>나. 전력수요관리 설비</p>	<p>1) 역률자동조절장치 2)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(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) 3) 전기대체냉방시설(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) 가) 가스냉방시설 나) 축열식냉방시설 다) 흡수냉방시설</p>
<p>다. 고효율인증기자재</p>	<p>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</p> <p>1) 엘이디(LED)조명(램프 및 등기구) 2) 고효율인증보일러 3) 무정전전원장치 4)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) 원심식 송풍기 6) 향온향습기</p>

		<p>7) 고기밀성 단열문</p> <p>8) 전력저장장치(Energy storage system)</p> <p>9) 스마트엘이디(LED) 조명시스템</p>
	라.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	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
2. 신·재생에너지보급시설	가. 신·재생에너지 생산시설	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·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
	나. 수소 생산·압축·저장시설	<p>1) 수소생산시설(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)</p> <p>2) 수소압축시설</p> <p>3) 수소저장시설(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)</p>
3. 그 밖의 시설	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	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